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에 관한 의결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13호
- 나. 제출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 나. 협약체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47조, 제51조
-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7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중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협약체결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의안형식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의안 제출시 첨부 서류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처리,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의회의 의결 없이 합의서나 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금천구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발의된 것임.
- 이는 협약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 의회의 의결 없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준과 형식,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계약 등 체결 시점에 구체적 금액이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무로서 비재정적 부담까지 포함하는 개념임.(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과-2666, 2025.5.8. 참고)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대법원 2012추22, 법제처 16-0149, 17-0301), 각종 협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및 자료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

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

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4. 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14. 5. 28.]